

# 2023년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27.(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강태욱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8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38건(안전번호 제2023-27227호~27464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7227호는 □□□□□□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암호화하여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현재 합법 시장에서 제공중인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로를 게시중인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7228호~27301호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 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7318호~2746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8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023-84회 제1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저작물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저작물명 등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제2023-84회 제2호 안건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쪽

수 기재 후 비공개함이 타당함.

- 참석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고, 구글 검색 결과 제한 심의는 쪽수를 기재하여 비공개함.

### 3. 안건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심의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우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시정권고 이행이 가능한 국내 온라인서비스에 소재중인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함으로써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272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722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안전번호 제2023-27228호~2730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 등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00건임.  
(안전번호 제2023-2724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 셋톱박스를 판매하고 있음. 해당 기기는 실시간 방송 및 VOD를 불법으로 연결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함.  
본건 기기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게시자가 본건 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 건 판매자는 본 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27228호~2730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7228호~27301호는 심의대상 게시물들의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8건임.

(안전번호 제2023-2730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의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27318호~2746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국가수사본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27337호는 웹하드에서 방송 '국가수사본부'의 1화~12화를 52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3. 3부터 웨이브에서 독점공개 중인 다큐멘터리임.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27402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을 37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2. 12. 14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27318호~2746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27318호~27464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27318호~27464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 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722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7228호~2730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7302호~27317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7318호~27464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9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5. 4.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강태욱

위원 심장섭

위원 위정현

위원 하병현